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34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4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통장연임 시 공개모집절차 명시
- 통·반장의 위촉, 위촉해제, 비밀유지조항의 불명확한 문구와 재위촉 제한사유 중 불합리한 부분 수정
- 통·반장 임무의 추가 명시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, 통·반 운영의 효율성 도모

□ 주요내용

- 통장 연임 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여 업무추진에 혼돈 방지 : 제5조제4항
- 통·반장의 위촉, 위촉해제, 비밀유지조항의 불명확한 문구 수정 : 제5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, 제5조의2제1항, 제8조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
위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단지역,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주거지역, 2회 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 ☞ 거주지 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위촉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회 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, 공단지역 ☞ 해당 통이 속한 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 중에서 위촉 가능 •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입주한지 1년 미만인 주거지역 ☞ 거주기간 제한 없이 위촉 가능
위촉 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기 전이라도 • 통·반을 통합하거나 폐치하는 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기 만료 전이라도 • 통·반을 통합·분할 또는 폐지하거나 그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
비밀 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제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

- 위촉 해제된 통·반장의 재위촉 제한 사유 중 불합리한 부분 개선 : 제5조의2제2항
 - 위촉해제 후 2년간 재위촉이 제한되는 사유 중 ‘통·반을 통합하거나 폐치하는 때’ 제외
- 통·반장의 임무 추가 명시 : 제6조제7호
- 단서조항 삭제 및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: 제5조제5항,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, 제12조제2항

- 개정조례안 : 붙임1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0. 2. 26. ~ 3. 17.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조례 : 붙임5
 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해당 통이 공단지역인 경우에는 그 통이 속하는 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고,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입주한 지 1년 미만인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통에서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제4항(중전의 제3항) 단서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연임할 수 있으며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단서 중 “제2항 단서규정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이라도”를 “만료 전이라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”을 “제1항제3호 및 제4호”로 한다.

5. 통·반을 통합·분할 또는 폐지하거나 그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

제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·동의 행정업무 지원

제8조제2항 중 “통제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통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본문 중 “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5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자치행정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김 용 선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팀장 박 근 호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고 근 영 (행정 3444)

현행	개정안
<p>④ (생략)</p> <p>⑤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<u>제3항</u>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⑥ 반장은 그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<u>제2항 단서규정</u>은 반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</p> <p>제5조의2(통·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)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<u>전이라도</u> 통·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통·반을 통합하거나 폐치하는 때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</u>에 따라 위촉 해제된 자는 위촉 해제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·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.</p> <p>제6조(임무) (생략)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<u>제4항</u>----- -----.</p> <p>⑦ ----- ----- -----, <u>제3항</u>----- -----.</p> <p>제5조의2(통·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<u>만료 전이라도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통·반을 통합·분할 또는 폐지하거나 그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제3호 및 제4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임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·동의 행정업무 지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비밀유지) ① (생략)</p> <p>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등을 <u>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제12조(통장활동평가) ① (생략)</p> <p>② 동장은 <u>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</u> 통장을 재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다. 다만,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8조(비밀유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 등을 <u>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제12조(통장활동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5조제4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 -----.</p>